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9. 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48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17.4.25)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바, 입영휴가 신설 및 경조사 일수를 일부 개정,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안 제8조제4항)
- 나.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둘째자녀부터까지 산입 확대(안 제19조제1항)
- 다. 상위 법령 및 지침과 맞지 아니한 연가일수 공제 휴직범위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21조제2항)

라. 공무원이 신청한 경조사 휴가 등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승인함(안 제24조제1항)

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및 만 4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한 육아시간 및 부모휴가를 성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게 함(안 제24조제4항, 안 제24조제13항)

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입영자 및 가족들을 예우하여 입영휴가를 부여함(안 제24조제15항)

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함(안 제32조)

아.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3)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바, 입영휴가 신설 및 경조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였으며,
  - 안 제19조제1항에서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둘째자녀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 안 제21조제2항에서 상위법령 및 지침과 맞지 아니한 연가일수 공제 휴직범위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24조제1항에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이 신청한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24조제4항, 제24조제13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및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한 육아

- 시간 및 부모휴가를 남·여 성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안 제24조제15항에 군 입영자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당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2조에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 끝으로, 별표3에서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정비를 현행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2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

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2(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

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0.6.>